학칙 제·개정 신구대조표

| 현행 | 제·개정(안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제2조(편제) ①본 대학교는 대학으로서 신 | 제2조(편제) ①본 대학교는 대학으로서 신 | 대학 편제 및 대학원 |
| 학대학, 인문대학, 예술체육대학, 사회과 | 학대학, 인문대학, 예술대학, 스포츠대학, | |
| 학대학, 창의융합대학, 아리교양대학을 | 사회과학대학, 창의융합대학, 아리교양대 | |
| 두고,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과, 특수 | 학을 두고,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과, | |
| 대학원으로서는 신학대학원, 교육대학원, | 특수대학원으로서는 <mark>대신신학대학원</mark> , 교 | |
| 경영행정대학원, 글로벌대학원을 둔다. | 육대학원, 경영행정대학원, 글로벌대학원 | |
| [개정 2011. 7. 1][개정 2012. 3. 1][개 | 을 둔다.[개정 2011. 7. 1][개정 2012. | |
| 정 2016.5.30.][개정 2019. 2.20.][개 | 3. 1][개정 2016.5.30.][개정 2019. | |
| 정 2022. 1.26.] | 2.20.][개정 2022. 1.26.] <mark>[개정 2024</mark> | |
| | .] | |
| 제2조의2(정원연동제) 학부(과)평가를 통 | 제2조의2(대학구조조정) 위기에 대처하고 | 「대학구조조정에 관 |
| 해 학부(과)정원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으 |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과 구조조 | 한 규정」 신설에 따 |
| 며,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[신설 | 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| 른 개정 |
| 2016. 5.30] | 따로 정한다.[신설 2016. 5.30][개정 | |
| | 2024] | |
| | | |